하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 2523

발의연월일: 2022. 10. 19.

발 의 자:최훈종 의원

1. 제안 이유

농업·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농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나.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3조)
- 다.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라.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12조)
- 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- 5. 입법예고 결과
 - 가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0. 20. ~ 10. 25.
 - 나. 의견 내용
 - 안 제7조 제2항 위원회 기능 대행 조항 삭제 등 수정사항 반영
- 6. 부서협의 결과 : 특이사항 없음

하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·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치유농업"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·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·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
 - 2. "치유농업시설"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(장비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 - 3. "치유농업서비스"란 심리적·사회적·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,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기본계획의 수립) 하남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 - 1.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 - 2. 치유농업 정책개발·투자계획 및 홍보방안

- 3.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
- 4. 치유농업 민·관 협력체계 구축
- 5.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4조(치유농업의 육성지원)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 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지역의 치유농업시설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
 - 2. 치유농업서비스 보급사업 및 특화사업
 - 3. 치유농업 관련 교육 · 체험 및 연수사업
 - 4.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
 - 5.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하남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5조(실태조사)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6조(전문가의 자문 등)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 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치유농업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- 제7조(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)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치유농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 - 1.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
 - 2. 치유농업의 육성지원
 - 3.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1.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
 - 2.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3.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- 4.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- 5.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제9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-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- 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1조(회의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-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할 수 있다.
 -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12조(수당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3조(포상)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,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「하남시 포상 조 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